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8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1호(2023.11.01.)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 면 적 : 896,210㎡
-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사장 이 한 준
-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월 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896,210	896,210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16,131	215,124	감) 1,007	24.1	24.0	
	단독주택		69,389	68,382	감) 1,007	7.7	7.6	
	공동주택		143,375	143,375	-	16.0	16.0	
	근린생활시설		3,367	3,367	-	0.4	0.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80,079	681,086	증) 1,007	75.9	76.0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213,718	218,243	증) 4,525	23.8	24.4	
		상업시설	18,122	18,122	-	2.0	2.0	
		업무시설	59,101	63,937	증) 4,836	6.6	7.1	
		공공청사	90,950	100,448	증) 9,498	10.1	11.3	
		자족시설	38,849	20,274	감) 18,575	4.3	2.3	
		복합커뮤니티시설	6,696	6,614	감) 82	0.7	0.7	
		문화시설	-	8,848	증) 8,848		1.0	
	공원 녹지	소 계	238,838	238,838	-	26.6	26.6	
		근린공원	88,235	80,385	감) 7,850	9.8	9.0	
		문화공원	41,972	41,972	-	4.7	4.7	
		소공원	17,232	25,079	증) 7,847	1.9	2.8	
		완충녹지	30,799	30,795	감) 4	3.4	3.4	
		경관녹지	50,264	50,624	증) 360	5.6	5.6	
		공공공지	1,412	1,089	감) 323	0.2	0.1	
		광장	4,821	4,821	-	0.5	0.5	
		보행자도로	4,103	4,073	감) 30	0.5	0.5	
		유수지	(13,593)	(13,593)	-	(1.5)	(1.5)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중복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공공시설 용지	교육 시설	소 계	29,218	23,000	감) 6,218	3.3	2.6	
		유치원	3,000	-	감) 3,000	0.3	-	• 1개소
		초등학교	13,056	23,000	증) 9,944	1.5	2.6	• 1개소
		중학교	13,162	-	감) 13,162	1.5	-	• 1개소
	도로	소 계	181,504	183,754	증) 2,250	20.3	20.5	
		일반도로	179,188	181,444	증) 2,256	20.0	20.2	
		보행자도로	2,316	2,310	감) 6	0.3	0.3	
	기타	소 계	16,801	17,251	증) 450	1.9	1.9	
		하수도(중계펌프장)	858	858	-	0.1	0.1	• 1개소
		주차장	7,087	7,537	증) 450	0.8	0.8	• 5개소
		기타시설(존치)	5,509	5,509	-	0.6	0.6	• 1개소
		종교시설	3,347	3,347	-	0.4	0.4	• 2개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

○ (기정) 9,297인 (인구밀도 103.7인/ha)

(변경) 9,504인 (인구밀도 106.0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지표(2.5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 계획

○ (기정) 3,946세대 (단독주택 252세대, 공동주택 3,694세대)

(변경) 3,802세대 (단독주택 250세대, 공동주택 3,552세대)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계	212,764	3,946	9,297	211,757	3,802	9,504	단독(6.6):공동(93.4)
단독주택	69,389	252	629	68,382	250	624	평균면적 호당 270㎡
공동주택	143,375	3,694	8,668	143,375	3,552	8,880	
60㎡ 이하	53,789	1,758	3,828	53,789	1,616	4,040	공공임대
	36,618	926	2,315	36,618	926	2,315	공공분양
60㎡ ~ 85㎡	26,886	512	1,280	26,886	512	1,280	민간임대
	26,082	498	1,245	26,082	498	1,245	민간분양

3) 주택용지 계획

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기 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
총 계		212,764	3,946	9,297	-	-	-	-
단독 주택	계	69,389	252	629	-	-	-	-
	주거전용	23,205	82	205	100	282	-	2.5인/세대
	점포겸용	36,558	138	344	180	260	-	2.5인/세대
	블록형	9,626	32	80	150	300	-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143,375	3,694	8,668	-	-	-	-
	60㎡이하	90,407	2,684	6,143	-	-	-	-
		36,618	926	2,315	220	87	공공분양	2.5인/세대
	A1	18,309	468	1,170	220	86	공공임대	2.5인/세대
		14,730	460	1,150	200	60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A2	4,500	200	500	200	45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16,250	630	1,008	200	51	통합공공임대	1.6인/세대
	A3	16,250	630	1,008	200	51	통합공공임대	1.6인/세대
	60~85㎡이하	52,968	1,010	2,525	-	-	-	-
	B1	26,886	512	1,280	200	105	민간임대	2.5인/세대
	B2	26,082	498	1,245	200	105	민간분양	2.5인/세대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변 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 고
총 계		211,757	3,802	9,504	-	-	-	-
단독 주택	계	68,382	250	624	-	-	-	-
	주거전용	23,073	82	205	100	280	-	2.5인/세대
	점포겸용	35,683	136	339	180	260	-	2.5인/세대
	블록형	9,626	32	80	150	300	-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143,375	3,552	8,880	-	-	-	-
	60㎡이하	90,407	2,542	6,355	-	-	-	-
	A1	36,618	926	2,315	220	87	공공분양	2.5인/세대
		18,309	468	1,170	220	86	공공임대	2.5인/세대
	A2	19,230	622	1,555	220	68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A3	16,250	526	1,315	220	68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60~85㎡이하	52,968	1,010	2,525	-	-	-	-
	B1	26,886	512	1,280	200	105	민간임대	2.5인/세대
	B2	26,082	498	1,245	200	105	민간분양	2.5인/세대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3,367	
근린생활시설	1	이천동 산 34-4번지 일원	2,195	
	2	이천동 83번지 일원	1,172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

가)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3개소	18,122	
상업시설	1	연호동 75-1번지 일원	11,668	
	2	연호동 82-1번지 일원	2,898	
	3	연호동 160번지 일원	3,556	

나)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7개소	59,101
	변경	-	9개소	63,937
업무시설	기정	1	연호동 153-4번지 일원	10,041
	기정	2	연호동 231번지번지 일원	7,940
	기정	3	연호동 583-2번지 일원	5,793
	기정	4	연호동 193-1번지 일원	19,630
	기정	5	연호동 164번지 일원	1,793
	기정	6	연호동 197-14번지 일원	4,986
	기정	7	이천동 60-1번지 일원	8,918
	신설	8	이천동 53-2번지 일원	2,408
	신설	9	이천동 50-5번지 일원	2,428

다) 공공청사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90,950
	변경	-	4개소	100,448
공공청사	기정	1	연호동 154-54번지 일원	42,975
	기정	2	연호동 203-2번지 일원	42,975
	기정	3	이천동 53-2번지 일원	5,000
	신설	4	연호동산7-1 일원	9,498

라)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4개소	38,849	
	변경	-	2개소	20,274	
자족시설	기정	1	연호동 305-2번지 일원	12,647	
	기정	2	연호동 산7번지 일원	9,498	
	폐지	-	-	-	
	기정	3	연호동 348-1번지 일원	7,627	
	기정	4	연호동 618번지 일원	9,077	
	폐지	-	-	-	

마) 복합커뮤니티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6,696	
	변경	-	2개소	6,614	
복합 커뮤니티시설	기정	1	연호동 288번지 일원	1,830	
	기정	2	연호동 296-2번지 일원	4,866	
	변경	-	-	4,784	

바) 문화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신설	-	1개소	8,848	
문화시설	신설	1	연호동 618번지 일원	8,848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8	11,722	185,607	19	3,458	59,142	22	3,359	40,032	37	4,905	75,626
	변경	78	11,775	187,827	18	3,289	57,452	22	3,295	39,040	38	5,191	79,124
광로	기정	1	-	-	-	-	-	1	-	-	-	-	-
	변경	1	-	-	-	-	-	1	-	-	-	-	-
대로	기정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변경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중로	기정	22	5,139	84,110	6	1,287	27,122	3	1,356	24,008	13	2,496	32,980
	변경	24	5,512	89,486	6	1,287	27,122	4	1,442	25,880	14	2,783	36,484
소로	기정	52	4,731	38,775	12	1,858	18,580	18	2,003	16,024	22	870	4,171
	변경	50	4,411	34,215	11	1,689	16,890	17	1,853	13,160	22	869	4,165
가각 및 버스정차대 등	기정	-	-	10,807	-								
	변경	-	-	12,211	-								

나)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5개소	7,087	
	변경	-	5개소	7,537	
주차장	기정	1	이천동 95-8번지 일원	1,528	
	기정	2	연호동 72-2번지 일원	1,424	
	기정	3	연호동 213번지 일원	2,652	
	기정	4	연호동 318-1번지 일원	862	
	기정	5	연호동 626번지 일원	621	
	변경	-	-	1,071	

다)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8개소	147,439	-
	변경	-	8개소	147,436	-
소공원	기정	소계	4개소	17,232	-
	변경		5개소	25,079	-
	기정	1	연호동 241번지 일원	6,911	-
	기정	2	연호동 303-2번지 일원	2,889	-
	기정	3	연호동 349-1번지 일원	2,615	-
	기정	4	연호동 634번지 일원	4,817	-
	변경			4,659	-
	신설	5	이천동 49-2번지 일원	8,005	-
근린공원	기정	소계	3개소	88,235	유수지1(10,213㎡) 중복면적 포함
	변경		2개소	80,385	
	기정	1	이천동 172-3번지 일원	31,632	유수지1(10,213㎡) 중복면적 포함
	변경			37,850	
	기정	2	이천동 363번지 일원	42,874	-
	변경			42,535	-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13,729	-
	폐지			-	-
	기정	1	연호동 99번지 일원	41,972	근린공원3→소공원5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41,972	유수지2(3,380㎡) 중복면적 포함, 대로1-19(946㎡), 대로3-1(3,396㎡) 중복면적 제외
	기정	1	연호동 99번지 일원	41,972	

라)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8개소	81,063	-
	변경	-	18개소	81,419	-
완충녹지	기정	소계	4개소	30,799	-
	변경		4개소	30,795	-
	기정	1	연호동 84-1번지 일원	2,233	-
	기정	2	이천동 146번지 일원	629	-
	기정	3	이천동 139번지 일원	25,501	-
	변경			25,497	-
	기정	4	연호동 산8-2 일원	2,436	-
경관녹지	기정	소계	14개소	50,264	
	변경		14개소	50,624	
	기정	1	이천동 61-2번지 일원	3,175	
	변경			3,527	
	기정	2	이천동 97-4번지 일원	44	
	기정	3	이천동 94번지 일원	9	
	기정	4	이천동 산35-11번지 일원	67	
	기정	5	연호동 120번지 일원	886	
	기정	6	연호동 120번지 일원	1,214	
	기정	7	연호동 산38-2번지 일원	5,239	
	기정	8	연호동 산38-4번지 일원	418	
	기정	9	연호동 557-4번지 일원	7,493	
	변경			7,501	
	기정	10	연호동 305-1번지 일원	1,294	
	기정	11	연호동 산15-2번지 일원	28,632	
	기정	12	연호동 601번지 일원	624	
	기정	13	연호동 601번지 일원	554	
	기정	14	연호동 601번지 일원	615	

마)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6개소	1,412	-
	변경	-	5개소	1,089	-
공공공지	기정	1	이천동 81-6번지 일원	85	-
	기정	2	연호동 153-1번지 일원	337	-
	기정	3	연호동 212-2번지 일원	324	-
	변경	3	연호동 212-2번지 일원	220	-
	기정	4	연호동 230-1번지 일원	328	-
	변경	4	연호동 230-1번지 일원	223	-
	기정	5	연호동 214-6번지 일원	224	-
	기정 폐지	6	연호동 300번지 일원	114 -	-

바)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4,821	-
광 장		1	연호동 69-1번지 일원	4,821	-

사)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29,218	-
	변경	-	1개소	23,000	-
학 교	기정	1	이천동 177-2번지 일원	13,056	초등학교
	변경	1	이천동 177-2번지 일원	23,000	-
	기정	2	이천동 180-3번지 일원	13,162	중학교
	폐지	2	이천동 180-3번지 일원	-	-
	기정	3	이천동 164번지 일원	3,000	유치원
	폐지	3	이천동 164번지 일원	-	-

아)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3,347
종교시설	기정	1	이천동 97-3번지 일원	1,469	-
	기정	2	이천동 50-6번지 일원	1,878	-

자) 기타시설(준치)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5,509
기타시설		기정	1	이천동 87번지 일원	5,509

차) 유수지(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13,593
유수지	기정	1	이천동 171-4번지 일원	10,21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연호동 115번지 일원	3,380	- 문화공원1 중복결정

카) 하수도(중계펌프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858
중계펌프장		기정	1	연호동 101번지 일원	858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공급용도구분			공급 면적 (㎡)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점포겸용	36,558	이주대책대상자	수의회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 초과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후	
		주거전용	23,205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블록형	9,626	협의양도인	수의회약	조성원가 11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이하	협의양도자	수의회약	감정평가액		민간 임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60~85㎡	52,968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자체사용	-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3,367	52,968	공모당선자	수의회약	감정가격 (주거지원: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회약	감정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18,122	59,101	생활대책대상자	수의회약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회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59,101	90,950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회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법원 검찰청 세무서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90,950		국가, 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복합 커뮤니티시설	6,696	38,849	국가, 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자족시설	38,849	38,849	국가, 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벤처 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 웨어 진흥 시설, 지식 산업 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의회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수의회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회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시설 용지	종교시설	3,347	7,087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회약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존치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7,087	7,087	국가, 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회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21조의5 별표2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별표4 기준적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변 경>

공급용도구분			공급 면적 (㎡)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점포겸용	35,683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 초과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주거전용	23,073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블록형	9,626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이하	53,789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36,618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52,968	공모당선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주거지원: 조성원가)		민간 임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3,367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18,12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63,937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100,44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찰서
	복합 커뮤니티시설		6,61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문화시설		8,84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20,27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벤처 기업집 적설, 소프트 웨어 진흥 시설, 지식 산업 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준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시설 용지		7,53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존치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교육 시설	초등학교		23,00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기타 시설 용지	종교시설		3,347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준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7,53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 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21조의5 별표2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별표4 기준적용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아.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 1]** (도면생략)

자. 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붙임 2]** (도면생략)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붙임 3]**

거.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획지형 단독주택 (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9,763	-	59,763	-
R	R1-1	1,040	1	260	
			2	260	
			3	260	
			4	260	
	R1-2	1,559	1	260	
			2	260	
			3	260	
			4	260	
			5	259	
			6	260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2-1	1,584	1	264	
			2	264	
			3	264	
			4	264	
			5	264	
			6	264	
	R2-2	5,197	1	254	
			2	255	
			3	255	
			4	254	
			5	255	
			6	255	
			7	255	
			8	255	
			9	255	
			10	255	
			11	255	
			12	266	
			13	266	
			14	266	
			15	266	
			16	266	
			17	266	
			18	266	
			19	266	
			20	266	
	R2-3	3,144	1	264	
			2	264	
			3	264	
			4	264	
			5	264	
			6	240	
			7	264	
			8	264	
			9	264	
			10	264	
			11	264	
			12	264	
	R2-4	1,989	1	226	
			2	252	
			3	252	
			4	251	
			5	252	
			6	252	
			7	252	
			8	252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2-5	5,380	1	266	
			2	269	
			3	269	
			4	269	
			5	269	
			6	269	
			7	269	
			8	269	
			9	269	
			10	270	
			11	270	
			12	269	
			13	269	
			14	269	
			15	269	
			16	269	
			17	269	
			18	269	
			19	269	
			20	270	
	R2-6	2,442	1	270	
			2	271	
			3	271	
			4	271	
			5	271	
			6	272	
			7	272	
			8	272	
			9	272	
	R3-1	1,409	1	293	
			2	293	
			3	293	
			4	265	
			5	265	
	R3-2	1,560	1	260	
			2	260	
			3	260	
			4	260	
			5	260	
			6	260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3-3	1,979	1	305	
			2	305	
			3	305	
			4	266	
			5	266	
			6	266	
			7	266	
	R3-4	397	1	397	
	R3-5	2,129	1	266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6	
			8	267	
	R3-6	1,174	1	235	
			2	235	
			3	235	
			4	235	
			5	234	
	R3-7	807	1	269	
			2	269	
			3	269	
	R3-8	1,088	1	272	
			2	272	
			3	272	
			4	272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3-9	2,074	1	260	
			2	259	
			3	259	
			4	260	
			5	259	
			6	259	
			7	259	
			8	259	
	R3-10	1,606	1	268	
			2	272	
			3	272	
			4	272	
			5	273	
			6	249	
	R4-1	5,452	1	257	
			2	256	
			3	256	
			4	256	
			5	290	
			6	290	
			7	290	
			8	290	
			9	290	
			10	290	
			11	279	
			12	279	
			13	279	
			14	278	
			15	278	
			16	278	
			17	254	
			18	254	
			19	254	
			20	254	
	R4-2	1,851	1	309	
			2	309	
			3	309	
			4	308	
			5	308	
			6	308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4-3	3,594	1	300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299	
			8	299	
			9	299	
			10	299	
			11	299	
			12	299	
	R4-4	3,437	1	288	
			2	288	
			3	288	
			4	285	
			5	285	
			6	285	
			7	288	
			8	288	
			9	288	
			10	285	
			11	285	
			12	284	
	R5-1	1,551	1	257	
			2	257	
			3	257	
			4	260	
			5	260	
			6	260	
	R5-2	1,606	1	269	
			2	274	
			3	274	
			4	263	
			5	263	
			6	263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5-3	1,301	1	261	
			2	260	
			3	260	
			4	260	
			5	260	
	R5-4	1,987	1	283	
			2	284	
			3	284	
			4	284	
			5	284	
			6	284	
			7	284	
	R5-5	2,426	1	278	
			2	278	
			3	278	
			4	308	
			5	309	
			6	320	
			7	347	
			8	308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8,756	-	58,756	-
R	R1-1	1,040	1	260	
			2	260	
			3	260	
			4	260	
	R1-2	1,559	1	260	
			2	260	
			3	260	
			4	260	
			5	259	
			6	260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2-1	1,584	1	264	
			2	264	
			3	264	
			4	264	
			5	264	
			6	264	
	R2-2	5,197	1	254	
			2	255	
			3	255	
			4	254	
			5	255	
			6	255	
			7	255	
			8	255	
			9	255	
			10	255	
			11	255	
			12	266	
			13	266	
			14	266	
			15	266	
			16	266	
			17	266	
			18	266	
			19	266	
			20	266	
	R2-3	3,143	1	262	
			2	262	
			3	262	
			4	262	
			5	262	
			6	261	
			7	262	
			8	262	
			9	262	
			10	262	
			11	262	
			12	262	
	R2-4	1,989	1	248	
			2	249	
			3	249	
			4	249	
			5	248	
			6	249	
			7	249	
			8	248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2-5	5,381	1	266	
			2	269	
			3	269	
			4	269	
			5	269	
			6	269	
			7	269	
			8	269	
			9	269	
			10	270	
			11	270	
			12	269	
			13	269	
			14	269	
			15	270	
			16	269	
			17	269	
			18	269	
			19	269	
			20	270	
	R2-6	2,442	1	270	
			2	271	
			3	271	
			4	271	
			5	271	
			6	272	
			7	272	
			8	272	
			9	272	
	R3-1	759	1	256	
			2	248	
			3	255	
	R3-2	1,492	1	249	
			2	249	
			3	248	
			4	249	
			5	249	
			6	248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3-3	1,909	1	288	
			2	294	
			3	294	
			4	259	
			5	258	
			6	258	
			7	258	
	R3-4	390	1	390	
	R3-5	2,129	1	266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6	
			8	267	
	R3-6	1,157	1	235	
			2	235	
			3	222	
			4	235	
			5	230	
	R3-7	807	1	269	
			2	269	
			3	269	
	R3-8	1,054	1	264	
			2	264	
			3	263	
			4	263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²)	
R	R3-9	2,074	1	260	
			2	259	
			3	259	
			4	260	
			5	259	
			6	259	
			7	259	
			8	259	
	R3-10	1,577	1	268	
			2	268	
			3	268	
			4	268	
			5	262	
			6	243	
	R4-1	5,369	1	235	
			2	235	
			3	236	
			4	236	
			5	290	
			6	290	
			7	290	
			8	290	
			9	290	
			10	290	
			11	279	
			12	279	
			13	279	
			14	278	
			15	278	
			16	278	
			17	254	
			18	254	
			19	254	
			20	254	
	R4-2	1,848	1	306	
			2	309	
			3	309	
			4	308	
			5	308	
			6	308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4-3	3,594	1	300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299	
			8	299	
			9	299	
			10	299	
			11	299	
			12	299	
	R4-4	3,437	1	288	
			2	288	
			3	288	
			4	285	
			5	285	
			6	285	
			7	288	
			8	288	
			9	288	
			10	285	
			11	285	
			12	284	
	R5-1	1,538	1	241	
			2	258	
			3	258	
			4	261	
			5	260	
			6	260	
	R5-2	1,605	1	272	
			2	272	
			3	272	
			4	263	
			5	263	
			6	263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	R5-3	1,301	1	261	
			2	260	
			3	260	
			4	260	
			5	260	
	R5-4	1,955	1	254	
			2	283	
			3	283	
			4	283	
			5	284	
			6	284	
			7	284	
	R5-5	2,426	1	278	
			2	278	
			3	278	
			4	308	
			5	309	
			6	320	
			7	347	
			8	308	

○ 블럭형 단독주택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9,626	-	9,626	-
RB	RB1	9,626	-	9,626	-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43,375	-	143,375	-
A	A1	54,927	-	54,927	
	A2	19,230	-	19,230	
	A3	16,250	-	16,250	
B	B1	26,886	-	26,886	
	B2	26,082	-	26,082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3,367	-	3,367	
근	근1	2,195	1	406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448	
			3	470	
			4	871	
	근2	1,172	1	586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586	

2)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8,122	-	18,122	
상	상1	11,668	1	842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842	
			3	1,861	
			4	1,113	
			5	1,113	
			6	1,113	
			7	1,420	
			8	1,422	
			9	918	
			10	1,024	
	상2	2,898	1	966	
			2	966	
			3	966	
	상3	3,556	1	866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866	
			3	871	
			4	953	

3) 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9,101	-	59,101	
업	업1	10,041	1	837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837	
			3	837	
			4	837	
			5	837	
			6	837	
			7	836	
			8	836	
			9	836	
			10	836	
			11	836	
			12	839	
	업2	7,940	1	1,304	
			2	1,304	
			3	1,362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업			4	1,323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5	1,323	
			6	1,324	
	업3	5,793	1	966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966	
			3	965	
			4	965	
			5	965	
			6	966	
	업4	19,630	1	13,017	
			2	6,613	
	업5	1,793	1	1,793	
	업6	4,986	1	3,305	
			2	1,681	
	업7	8,918	1	4,459	
			2	4,459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계	-	63,937	-	63,937	
업	업1	10,041	1	837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권장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837	
			3	837	
			4	1,255	
			5	1,255	
			6	836	
			7	836	
			8	836	
			9	1,255	
			10	1,257	
	업2	7,940	1	1,304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1,304	
			3	1,362	
			4	1,323	
			5	1,323	
			6	1,324	
	업3	5,793	1	966	
			2	966	
			3	965	
			4	965	
			5	965	
			6	966	
	업4	19,630	1	13,017	
			2	6,613	
	업5	1,793	1	1,793	
	업6	4,986	1	3,305	
			2	1,681	
	업7	8,918	1	4,459	
			2	4,459	
	업8	2,408	1	2,408	
	업9	2,428	1	2,428	

4) 자족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38,849	-	38,849	
자	자1	12,647	1	6,323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6,324	
	자2	9,498	1	3,166	
			2	3,166	
			3	3,166	
	자3	7,627	1	7,627	
	자4	9,077	1	4,009	
			2	2,534	
			3	2,534	

■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20,274	-	20,274	
자	자1	12,647	1	3,162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3,162	
			3	3,162	
			4	3,161	
	자3	7,627	1	7,627	

5) 커뮤니티시설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6,696	-	6,696	-
커	커1	1,830	-	1,830	
	커2	4,866	-	4,866	

■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6,614	-	6,614	-
커	커1	1,830	-	1,830	
	커2	4,784	-	4,784	

6) 문화시설용지 (신규)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8,848	-	8,848	
문	문1	8,848	1	1,961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1,944	
			3	1,782	
			4	1,782	
			5	1,379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주차장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087	-	7,087	-
주	주1	1,528	-	1,528	
	주2	1,424	-	1,424	
	주3	2,652	-	2,652	
	주4	862	-	862	
	주5	621	-	621	

■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537	-	7,537	-
주	주1	1,528	-	1,528	
	주2	1,424	-	1,424	
	주3	2,652	-	2,652	
	주4	862	-	862	
	주5	1,071	-	1,071	

○ 공공청사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90,950	-	90,950	-
공	공1	42,975	-	42,975	검찰청
	공2	42,975	-	42,975	법원
	공3	5,000	-	5,000	세무서

■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00,448	-	100,448	-
공	공1	42,975	-	42,975	검찰청
	공2	42,975	-	42,975	법원
	공3	5,000	-	5,000	세무서
	공4	9,498	-	9,498	경찰서

○ 교육시설 (변경)

■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29,218	-	29,218	-
	초1	13,056	-	13,056	초등학교
	중1	13,162	-	13,162	중학교
	유1	3,000	-	3,000	유치원

■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23,000	-	23,000	-
	초1	23,000	-	23,000	초등학교

○ 종교시설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3,347	-	3,347	-
종	종1	1,469	-	1,469	
	종2	1,878	-	1,878	

○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858	-	858	
오	오1	858	-	858	오수중계펌프장

○ 기타시설(존치) (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5,509	-	5,509	-
기타	기타1	5,509	-	5,50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획지형 단독주택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블록형 단독주택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B1, B2	도면표시	A1, A2, A3, B1, B2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중 상업용도의 시설은 세대당 0.5㎡로 하며, 임대주택은 세대당 1㎡까지 설치할 수 있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A1 • A2, A3, B1, B2
		• 220% 이하 • 200% 이하
	높이	• A1 • A2, A3, B1, B2
		• 25층 이하 • 20층 이하
	주택규모 및 세대수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지구간의 위치와 폭, 층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커뮤니티 활성화구간 • 커뮤니티 활성화구간의 위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통경축 구간 • 통경축 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면적 (㎡)	수용 세대수 (호)	평균면적 (㎡)	최고층수 (층)	용적률 (%)	비 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43,375	3,694	-	-	-	
아파트	A1	소계	54,927	1,394	-	25	220%	-
		60㎡ 이하	36,618	926	87	25	220%	공공분양
			18,309	468	86	25	220%	공공임대
	A2	소계	19,230	660	-	20	200%	-
		60㎡ 이하	14,730	460	60	20	20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4,500	200	45	20	200%	통합공공임대
	A3	소계	16,250	630	-	20	200%	-
		60㎡ 이하	16,250	630	51	20	200%	통합공공임대
	B1	소계	26,886	512	-	20	200%	-
		60~85㎡ 이하	26,886	512	105	20	200%	민간임대
	B2	소계	26,082	498	-	20	200%	-
		60~85㎡ 이하	26,082	498	105	20	200%	민간분양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B1, B2	도면표시		A1, A2, A3, B1, B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중 상업용도의 시설은 세대당 0.5㎡로 하며, 임대주택은 세대당 1㎡까지 설치할 수 있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A1, A2, A3		• 220% 이하
		• B1, B2		• 200% 이하
	높이	• A1		• 25층 이하
		• A2, A3, B1, B2		• 20층 이하
	주택규모 및 세대수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배치	○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치구간의 위치와 폭, 층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커뮤니티 활성화구간 • 커뮤니티 활성화구간의 위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통경축 구간 • 통경축 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면적 (㎡)	수용 세대수 (호)	평균면적 (㎡)	최고층수 (층)	용적률 (%)	비 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43,375	3,552	-	-	-	
아 파 트	A1	소계	54,927	1,394	-	25	220%	-
		60㎡ 이하	36,618	926	87	25	220%	공공분양
			18,309	468	86	25	220%	공공임대
	A2	소계	19,230	622	-	20	220%	-
		60㎡ 이하	19,230	622	68	20	220%	통합공공임대
	A3	소계	16,250	526	-	20	220%	-
		60㎡ 이하	16,250	526	68	20	220%	통합공공임대
	B1	소계	26,886	512	-	20	200%	-
		60~85㎡ 이하	26,886	512	105	20	200%	민간임대
	B2	소계	26,082	498	-	20	200%	-
		60~85㎡ 이하	26,082	498	105	20	200%	민간분양

2)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1~업7	도면표시		업1 ~ 업2	업3	업4 ~ 업7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의한 다음의 시설 ▶법무관련 서비스업(M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M712)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나목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업1 ~ 업3, 업7 • 업4 ~ 업6	• 6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업1 ~ 업3, 업7 • 업4 ~ 업6	• 400% 이하 • 50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역,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이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1~업9	도면표시		업1 ~ 업2	업3	업4 ~ 업9
	용도	주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법무관련 서비스업(M71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M712)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허 용 용 도	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아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나목 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업1 ~ 업3, 업7 ~ 업9 • 업4 ~ 업6	• 6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업1 ~ 업3, 업7 ~ 업9 • 업4 ~ 업6	• 400% 이하 • 500% 이하	
높이		• 업1 ~ 업7	• 12층 이하		
		• 업8	• 10층 이하		
		• 업9	• 8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역,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이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4) 자족시설용지 (변경)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자1~자4	도면표시	자1, 자2, 자4 자3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 이하)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허용용도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리무진 안마원, 이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리무진, 바목, 사목, 이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기단부(2층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자1, 자2, 자3 • 400% 이하
		• 자4 • 350% 이하
	높이	• 자1, 자2, 자3 • 10층 이하
		• 자4 • 8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이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자1, 자3	도면표시	자1	자3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 이하)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이목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사목, 이목, 자목, 카목(교습소 제외), 타목, 파목(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다목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기단부(2층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이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5) 문화시설용지 (신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1	도면표시	문1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갤러리)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갤러리)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80% 이상으로 함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식품, 잡화, 완구, 서적 소매점),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아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이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5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주1	주2	주3	주4, 주5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500% 이하	• 400% 이하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2층 이하	• 3층 이하
공1 ~ 공3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4조에 따른 공공청사(법원, 검찰청, 세무서)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공1, 공2		공3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 10층 이하	
초1, 중1, 유1	용도	허용 용도	초1, 중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유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한 어린이집(연면적 30% 미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커1 ~ 커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아목, 하목의 금융업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중1, 중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기존 건축물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및 그 부속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도 포함한다.
기타1	용도	허용 용도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주1 ~ 주4, 공1 ~ 공3, 초1, 중1, 유1, 커1, 커2, 중1, 중2, 기타1	배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건축 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5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주1	주2	주3	주4, 주5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500% 이하	• 400% 이하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2층 이하	• 3층 이하	
공1 ~ 공4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4조에 따른 공공청사(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찰서)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공1, 공2		공3, 공4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 10층 이하		
초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초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커1 ~ 커2	용도	허용 용도	주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부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아목, 하목의 금융업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중1, 중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기존 건축물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및 그 부속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도 포함한다.
기타1	용도	허용 용도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주1 ~ 주5, 공1 ~ 공4, 초1, 커1, 커2, 중1, 중2, 기타1	배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건축 선	• 건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7)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96,210	-	896,21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87,113	감) 924	586,189	65.4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343	증) 23	138,366	1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122	감) 6,217	212,905	23.8	-
	준 주 거 지 역	229,648	증) 5,270	234,918	26.2	-
상업 지역	소 계	61,480	-	61,480	6.9	-
	일 반 상 업 지 역	61,480	-	61,480	6.9	-
녹지 지역	소 계	247,617	증) 924	248,541	27.7	-
	자 연 녹 지 지 역	247,617	증) 924	248,541	27.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9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051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372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73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9,268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5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7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8	11,722	185,607	19	3,458	59,142	22	3,359	40,032	37	4,905	75,626
	변경	78	11,775	187,827	18	3,289	57,452	22	3,295	39,040	38	5,191	79,124
광로	기정	1	-	-	-	-	-	1	-	-	-	-	-
	변경	1	-	-	-	-	-	1	-	-	-	-	-
대로	기정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변경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중로	기정	22	5,139	84,110	6	1,287	27,122	3	1,356	24,008	13	2,496	32,980
	변경	24	5,512	89,486	6	1,287	27,122	4	1,442	25,880	14	2,783	36,484
소로	기정	52	4,731	38,775	12	1,858	18,580	18	2,003	16,024	22	870	4,171
	변경	50	4,411	34,215	11	1,689	16,890	17	1,853	13,160	22	869	4,165
가각 및 버스정차 대 등	기정	-	-	10,807	-								
	변경	-	-	12,211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60.6	주간선도로	23,439	파호동 12-3	사월동 구역계	일반도로	-	건고제1387 (1965.02.02.)	가감속차로 포함 (1,077㎡)
기정	대로	1	19	28~77	도시고속도로	6,780 (313)	범물동 광로2-16	율하동 광로2-12	자동차 전용도로	-	총고제186호 (17. 3.23)	
기정	대로	3	75	25~70	보조간선도로	1,026	연호동 광로2-1	수성구 내환동 광로2-8	보조간선도 로	-	대고 제235호 (1993.12..30)	가감속차로 포함 (132㎡)
기정	대로	3	연호1	25~27	보조간선 도로	1,539	연호동 159-3	이천동 73-1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문화공원1 중복결정 (3,497㎡) 도로 (대로1-19) 중복결정 (946㎡)
기정	중로	1	연호1	21	집산도로	1,237 (954)	연호동 220-2	연호동 149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1	연호1	21~27	집산도로	1,237 (954)	연호동 220-2	연호동 149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1	연호3	21	집산도로	59	연호동 238	연호동 233-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1	연호4	21	집산도로	189	연호동 239-1	연호동 316-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1	연호5	22	집산도로	79	연호동 202-2	연호동 197-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1	연호6	23.5	집산도로	3	연호동 235-3	연호동 235-3	일반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기정	중로	1	연호7	23.5	집산도로	3	연호동 215-2	연호동 215-2	일반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연호1	18~19	집산도로	701	이천동 233-3	이천동 333-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2	연호1	18~19	집산도로	701	이천동 233-3	이천동 333-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2	연호2	18	집산도로	388	연호동 216-1	연호동 150-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2	연호2	18~21	집산도로	388	연호동 216-1	연호동 150-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2	연호3	16.5	집산도로	267	연호동 315-2	연호동 347-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1	13.5	집산도로	252	이천동 52-3	이천동 65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3	연호1	13.5	집산도로	292	이천동 52-2	이천동 65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2	13.5	국지도로	229	연호동 71-3	연호동 80-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3	13.5	집산도로	476	연호동 132-3	이천동 76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4	13.5	집산도로	59	연호동 575	연호동 150-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5	12	집산도로	188	연호동 192-1	연호동 163-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6	13.5	국지도로	94	연호동 263	연호동 585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7	13.5	국지도로	246	연호동 599	연호동 26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8	13.5	집산도로	281	연호동 579	연호동 600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9	13.5	집산도로	57	연호동 295-1	연호동 609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10	12~14	집산도로	99 (52)	연호동 347-2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11	12	국지도로	291	이천동 81-6	이천동 126-4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12	13.5	국지도로	171	연호동 256	연호동 580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중로	3	연호13	13.5	집산도로	100	연호동 347-2	연호동 269-8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1	10	국지도로	85	이천동 333-3	이천동 417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2	연호4	15	국지도로	86	이천동 329-1	이천동 326-6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2	10	국지도로	321	이천동 333-2	이천동 343-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4	10	국지도로	35	연호동 592	연호동 59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5	10	국지도로	148	연호동 270-1	연호동 584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6	10	국지도로	180	연호동 305-4	연호동 26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7	10	국지도로	120	연호동 617	연호동 295-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1	연호7	10	국지도로	150	연호동 601	연호동 300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8	10	국지도로	247	연호동 601	연호동 364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중로	3	연호14	12	국지도로	247	연호동 601	연호동 364-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연호9	10	국지도로	232	이천동 326-4	이천동 333-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1	연호9	10	국지도로	232	이천동 326-4	이천동 333-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10	10	특수도로	153	이천동 227	이천동 195-2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11	10	특수도로	22	연호동 168	연호동 166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1	연호13	10	국지도로	80	연호동 150-2	연호동 143	일반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기정	소로	1	연호14	10	특수도로	235	연호동 154-55	연호동 232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변경	소로	1	연호14	10	특수도로	232	연호동 154-125	연호동 233-3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기정	소로	2	연호1	8	국지도로	103	이천동 336	이천동 345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2	8	국지도로	103	이천동 338-2	이천동 347-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6	8	집산도로	324	연호동 산38-4	연호동 288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7	8	국지도로	122	연호동 633	연호동 37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2	연호7	8	국지도로	118	연호동 633	연호동 37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8	8	국지도로	138	연호동 601	연호동 37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1	연호15	10	국지도로	136	연호동 601	연호동 37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9	8	국지도로	212	연호동 557-27	연호동 427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2	연호9	8	국지도로	212	연호동 557-27	연호동 427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0	8	국지도로	41	연호동 557-27	연호동 432-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2	연호10	8	국지도로	41	연호동 557-27	연호동 432-2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1	8	국지도로	140	연호동 361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2	연호11	8	국지도로	134	연호동 361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2	8	국지도로	142	연호동 631	연호동 369-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3	8	국지도로	70	이천동 321-5	이천동 313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4	8	국지도로	105	이천동 322	이천동 316-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5	8	특수도로	33	연호동 75-1	연호동 74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6	8	특수도로	35	연호동 71-2	연호동 74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8	8	국지도로	79	연호동 635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변경	소로	2	연호18	8	국지도로	77	연호동 635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2	연호19	8	국지도로	49	이천동 146	이천동 83	일반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기정	소로	2	연호20	8	국지도로	187	이천동 150-1	이천동 150-1	일반도로	—	국고제202-805호 (2022.12.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연호21	8	국지도로	46	이천동 143	이천동 83	일반도로	—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기정	소로	2	연호22	8	국지도로	74	이천동 83	이천동 83	일반도로	—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기정	소로	3	수9	5	국지도로	73	연호동 601	연호동 601	일반도로	—	대구광역시고시 제1995-165호 (95.08.24)	지구외도로 가감속차로 포함 (6㎡)
기정	소로	3	연호1	4.5	집산도로	176	연호동 120	연호동 133-3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2	4.8	집산도로	155	연호동 120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3	4	집산도로	17	연호동 557-3	연호동 557-3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4	5	집산도로	75	연호동 601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5	5.2	집산도로	126 (65)	연호동 601	연호동 601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지구외도로 가감속차로 포함 (182㎡)
기정	소로	3	연호6	6	국지도로	7	연호동 317-1	연호동 317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7	6	국지도로	9	연호동 257-2	연호동 257-2	일반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9	6	특수도로	16	이천동 338-2	이천동 335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0	6	특수도로	20	이천동 333-2	이천동 340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1	6	특수도로	37	이천동 341	이천동 342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2	6	특수도로	37	이천동 342	이천동 344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3	6	특수도로	16	이천동 342	이천동 360-2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4	6	특수도로	16	이천동 349	이천동 350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5	6	특수도로	9	연호동 317	연호동 316-1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6	6	특수도로	8	연호동 257-2	연호동 257-2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8	6	특수도로	16	연호동 630	연호동 628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19	6	특수도로	29	연호동 633	연호동 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20	6	특수도로	42	연호동 197-2	연호동 197-6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21	6	특수도로	23	이천동 319	이천동 32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22	6	특수도로	16	이천동 317-1	이천동 319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소로	3	연호24	6	특수도로	8	연호동 630	연호동 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변경	소로	3	연호24	6	특수도로	7	연호동 630	연호동 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 () 는 지구내 편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연호1	중로1-연호1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21m → 21~27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2-연호1	중로2-연호1	• 도로 선형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2-연호2	중로2-연호2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8m → 18~21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3-연호1	중로3-연호1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52m → 292m - 기점 : 이천동52-3→이천동52-2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1-연호1	중로2-연호4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10m → 15m - 연장 : 85m → 86m - 기점 : 이천동333-3→이천동329-1 - 종점 : 이천동417→이천동326-6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1-연호7	소로1-연호7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120m → 150m - 기점 : 연호동617→연호동601 - 종점 : 연호동295-1→연호동300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1-연호8	중로3-연호14	• 도로 폭원 및 종점 변경 - 폭원 : 10m → 12m - 종점 : 연호동364→연호동364-1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1-연호9	소로1-연호9	• 도로 선형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1-연호14	소로1-연호14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35m → 232m - 기점 : 연호동154-55→연호동154-125 - 종점 : 연호동232→연호동233-3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7	소로2-연호7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122m → 118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8	소로1-연호15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8m → 10m - 연장 : 138m → 136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9	소로2-연호9	• 도로 선형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10	소로2-연호10	• 도로 선형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11	소로2-연호11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140m → 134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2-연호18	소로2-연호18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79m → 77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3-연호24	소로3-연호24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8m → 7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나. 공간시설

1) 광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50,832	—	150,832	—	—
기정	1	연호1 소공원	소공원	연호동 241번지 일원	6,911	—	6,911	국고제2020-1075 (2020.12.30)	
기정	2	연호2 소공원	소공원	연호동 303-2번지 일원	2,889	—	2,889	국고제2020-1075 (2020.12.30)	
기정	3	연호3 소공원	소공원	연호동 349-2번지 일원	2,615	—	2,615	국고제2020-1075 (2020.12.30)	
변경	4	연호4 소공원	소공원	연호동 634번지 일원	4,817	감) 158	4,659	국고제2020-1075 (2020.12.30)	
신설	5	연호5 소공원	소공원	이천동 49-2번지 일원	—	증) 8,005	8,005		
변경	1	연호1 근린공원	근린공원	이천동 172-3번지 일원	31,632	증) 6,218	37,850	국고제2020-1075 (2020.12.30)	유수지1 중복결정 (10,213㎡)
변경	2	연호2 근린공원	근린공원	이천동 363번지 일원	42,874	감) 339	42,535	국고제2020-1075 (2020.12.30)	
폐지	3	연호3 근린공원	근린공원	이천동 50-4번지 일원	13,729	감) 13,729	—	국고제2020-1075 (2020.12.30)	
변경	1	연호1 문화공원	문화공원	연호동 99번지 일원	45,365	증) 3	45,368	국고제2020-1075 (2020.12.30)	대로1-19 중복결정(946㎡) 대로3-1중복 결정(3,306㎡) 유수지2중복결정 (3,38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연호4 소공원 (소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4,817m ² → 4,659m ² (감 158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5	연호5 소공원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1	연호1 근린공원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31,632m ² → 37,850m ² (증 6,218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	연호2 근린공원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42,874m ² → 42,535m ² (감 339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3	연호3 근린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 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1	연호1 문화공원 (문화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45,365m ² → 45,368m ² (증 3m ²)	• 면적 오기 정정

3)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81,063	증) 356	81,419	-	
기정	1	연호1 녹지	완충녹지	연호동 84-1번지 일원	2,233	-	2,233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2	연호2 녹지	완충녹지	이천동 146번지 일원	629	-	629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변경	3	연호3 녹지	완충녹지	이천동 139-3번지 일원	25,501	감) 4	25,497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4	연호4 녹지	완충녹지	연호동 산8-2번지 일원	2,436	-	2,436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변경	1	연호8 녹지	경관녹지	이천동 61-2번지 일원	3,175	증) 352	3,527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2	연호9 녹지	경관녹지	이천동 97-4번지 일원	44	-	44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3	연호10 녹지	경관녹지	이천동 94번지 일원	9	-	9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4	연호11 녹지	경관녹지	이천동 산35-11번지 일원	67	-	67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5	연호12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120번지 일원	886	-	886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6	연호13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120번지 일원	1,214	-	1,214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7	연호14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산38-2번지 일원	5,239	-	5,239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8	연호15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산38-4번지 일원	418	-	418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변경	9	연호16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557-4번지 일원	7,493	증) 8	7,501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10	연호17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305-1번지 일원	1,294	-	1,294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11	연호18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산15-3번지 일원	28,632	-	28,632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12	연호19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601번지 일원	624	-	624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13	연호20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601번지 일원	554	-	554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14	연호21 녹지	경관녹지	연호동 601번지 일원	615	-	615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연호3 녹지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25,501㎡ → 25,497㎡ (감 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1	연호8 녹지 (경관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3,175㎡ → 3,527㎡ (증 352㎡)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9	연호16 녹지 (경관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7,493㎡ → 7,501㎡ (증 8㎡)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4)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412	감) 323	1,089	-	
기정	1	연호1 공공공지	이천동 81-6번지 일원	85	-	85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기정	2	연호2 공공공지	연호동 150-3번지 일원	337	-	337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변경	3	연호3 공공공지	연호동 234번지 일원	324	감) 104	220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변경	4	연호4 공공공지	연호동 230-1번지 일원	328	감) 105	223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기정	5	연호5 공공공지	연호동 214-6번지 일원	224	-	224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폐지	6	연호6 공공공지	연호동 300번지 일원	114	감) 114	-	국고제2022-805호 (2022.12.27)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연호3 공공공지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 324㎡ → 220㎡ (감 10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4	연호4 공공공지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 328㎡ → 223㎡ (감 105㎡)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6	-	• 공공공지 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9,218	감) 6,218	23,000	-	
기정	1	연호 초등 학교	초등 학교	이천동 177-2번지 일원	13,056	증) 9,944	23,000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폐지	2	연호 중학교	중학교	이천동 180-3번지 일원	13,162	감) 13,162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폐지	3	연호 유치원	유치원	이천동 164번지 일원	3,000	감) 3,000	-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호 초등학교 (초등학교)	• 면적 변경 - 면적 : 13,056㎡ → 23,000㎡ (증 9,94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	연호 중학교 (중학교)	• 중학교 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3	연호 유치원 (유치원)	• 유치원 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90,950	증) 9,498	100,448	-	
기정	1	연호1 공공청사	검찰청	연호동 154-54번지 일원	42,975	-	42,975	국고채2020-1075호 (2020.12.30)	
기정	2	연호2 공공청사	법원	연호동 203-2번지 일원	42,975	-	42,975	국고채2020-1075호 (2020.12.30)	
기정	3	연호3 공공청사	세무서	이천동 53-2번지 일원	5,000	-	5,000	국고채2020-1075호 (2020.12.30)	
신설	4	연호4 공공청사	경찰서	연호동 산7-1 일원	-	증) 9,498	9,498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연호4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50,418	423,450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185,607	187,827	- 78개 노선(보행자도로 포함)
광 장	4,821	4,821	- 1개소
공 원	147,439	147,436	- 근린공원(2개소, 유수지1(10,213㎡) 중복결정), 소공원(5개소), 문화공원(1개소, 대로1-19(946㎡), 대로3-1(3,396㎡), 유수지2(3,380㎡) 중복결정)
녹 지	81,063	81,419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4개소
공 공 공 지	1,412	1,089	- 5개소
학 교	29,218	-	-
하 수 도	858	858	- 1개소
유 수 지	(13,593)	(13,593)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2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변경없음)

○ 국방부(변경없음)

○ 기획재정부(변경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수성구(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변경)

구분		노선수	합 계		노선수	1 류		노선수	2 류		노선수	3 류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8	11,722	185,607	19	3,458	59,142	22	3,359	40,032	37	4,905	75,626
	변경	78	11,775	187,827	18	3,289	57,452	22	3,295	39,040	38	5,191	79,124
광로	기정	1	-	-	-	-	-	1	-	-	-	-	-
	변경	1	-	-	-	-	-	1	-	-	-	-	-
대로	기정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변경	3	1,852	51,915	1	313	13,440	-	-	-	2	1,539	38,475
중로	기정	22	5,139	84,110	6	1,287	27,122	3	1,356	24,008	13	2,496	32,980
	변경	24	5,512	89,486	6	1,287	27,122	4	1,442	25,880	14	2,783	36,484
소로	기정	52	4,731	38,775	12	1,858	18,580	18	2,003	16,024	22	870	4,171
	변경	50	4,411	34,215	11	1,689	16,890	17	1,853	13,160	22	869	4,165
가각 및 버스정차대 등	기정	-	-	10,807	-								
	변경	-	-	12,211	-								

2) 광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m²)	비 고
광장	1	연호동 69-1번지 일원	4,821	

3)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8개소	147,439	-
	변경	-	8개소	147,436	
소공원	기정	소계	4개소	17,232	
	변경		5개소	25,079	
	기정	1	연호동 241번지 일원	6,911	-
	기정	2	연호동 303-2번지 일원	2,889	-
	기정	3	연호동 349-1번지 일원	2,615	-
	기정	4	연호동 634번지 일원	4,817	-
	변경			4,659	-
	신설	5	이천동 49-2번지 일원	8,005	-
	근린공원	기정	소계	3개소	88,235
변경		2개소		80,384	
기정		1	이천동 172-3번지 일원	31,632	유수지1(10,213㎡) 중복결정
변경				37,850	-
기정		2	이천동 363번지 일원	42,874	-
변경				42,535	-
기정		3	이천동 50-4번지 일원	13,729	-
폐지			-	-	-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41,972	
	기정	1	연호동 99번지 일원	41,972	유수지2(3,380㎡) 중복면적 포함, 대로1-19(946㎡), 대로3-1(3,396㎡) 중복면적 제외

4)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8개소	81,063	-
	변경	-	18개소	81,420	
완충녹지	기정	소계	4개소	30,799	-
	변경		4개소	30,795	-
	기정	1	연호동 84-1번지 일원	2,233	-
	기정	2	이천동 146번지 일원	629	-
	기정	3	이천동 139번지 일원	25,501	-
	변경			25,497	
	기정	4	연호동 산8-2 일원	2,436	-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경관녹지	기정	소계	14개소	50,264	
	변경		14개소	50,624	
	기정	1	이천동 61-2번지 일원	3,175	
	변경			3,527	
	기정	2	이천동 97-4번지 일원	44	
	기정	3	이천동 94번지 일원	9	
	기정	4	이천동 산35-11번지 일원	67	
	기정	5	연호동 120번지 일원	886	
	기정	6	연호동 120번지 일원	1,214	
	기정	7	연호동 산38-2번지 일원	5,239	
	기정	8	연호동 산38-4번지 일원	418	
	기정	9	연호동 557-4번지 일원	7,493	
	변경			7,501	
	기정	10	연호동 305-1번지 일원	1,294	
	기정	11	연호동 산15-2번지 일원	28,632	
	기정	12	연호동 601번지 일원	624	
	기정	13	연호동 601번지 일원	554	
	기정	14	연호동 601번지 일원	615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6개소	1,412	-
	변경	-	5개소	1,089	
공공공지	기정	1	이천동 81-6번지 일원	85	-
	기정	2	연호동 153-1번지 일원	337	-
	기정	3	연호동 212-2번지 일원	324	-
	변경			220	
	기정	4	연호동 230-1번지 일원	328	
	변경			223	
	기정	5	연호동 214-6번지 일원	224	
	기정	6	연호동 300번지 일원	114	
	폐지			-	

6) 유수지(저류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13,593	-
유수지	기정	1	이천동 171-4번지 일원	10,21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연호동 115번지 일원	3,380	- 문화공원1 중복결정

7)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858	-
중계 펌프장	기정	1	연호동 101번지 일원	858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이용상태

- 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과수원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구거 : 농수로로 이용
- 담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대 : 대지로 이용
- 도로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잡종지 : 도로로 이용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하천 : 하천으로 활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50,418	423,450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185,607	187,827	- 78개 노선(보행자도로 포함)
광 장	4,821	4,821	- 1개소
공 원	147,439	147,436	- 근린공원(2개소, 유수지1(10,213㎡) 중복결정), 소공원(5개소), 문화공원(1개소, 대로1-19(946㎡), 대로3-1(3,396㎡), 유수지2(3,380㎡) 중복결정)
녹 지	81,063	81,419	- 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14개소
공 공 공 지	1,412	1,089	- 5개소
학 교	29,218	-	- 초등학교1개소
하 수 도	858	858	- 1개소
유 수 지	(13,593)	(13,593)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절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2.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연호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GB 및 범안로로 인해 단절된 사업 지구 내 동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중(집)1-연호1호선) 설치를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명 및 내용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중로1-연호1호선)

라. 사업의 규모

- 규 모 : 연장 = 283m, 폭원=21~27m, 면적=10,080㎡
(지구 내 : 연장 = 954m, 폭원=21~27m)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사장 이 한 준

바. 사업기간 : 지구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3]

차. 관계서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1	연호1	21~27	집산 도로	1,237 (283)	연호동 220-2	연호동 149	일반 도로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 () 는 지구 밖 사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연호1	중로1-연호1	- 선형 변경 - B = 21~27m, - L = 954m(연호지구내), 283m(지구 밖 사업)	대구연호지구 동서 연결을 위한 지구 밖 도시계획도로 신설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이천동	187	묘	311	164	윤**	경산군 고산면 **동	1/1	-	-	-	-
2	이천동	188	전	380	21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1/1	-	-	-	-
3	이천동 산113	임	임	23,008	3,408	황**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1/2	**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동구 **로	근저당권 지상권	-
						송**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1/2	-	-	-	-
4	연호동	299	전	998	623	서**	경산군 압량면 **동	1/1	-	-	-	-
5	연호동	601	도	19,787	1,285	공	대구광역시	1/1	-	-	-	-
6	연호동 산39	임	임	14,455	4,579	박**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1/1	-	-	-	-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1	1,285	
도 로	1	1,285	

나.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21~27	1	283	10,080	법면포함
중로	21~27	1	283	10,080	1,237m (연호지구내:954 연호지구외:283)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 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	1,285	1	1,285	-	-	
도로	1	1,285	1	1,285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대구광역시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1	수성구 연호동	601	도	19,787	1,285	
계	1필지			19,787	1,285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적(㎡)	비 고
계	10,080	
도 로	10,08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	1,285	
도 로	1	1,285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21~27	1	283	10,080	법면포함
중 로	21~27	1	283	10,080	1,237m (연호지구내:954 연호지구외:283)